

2021년도

무주 무주 설천-무풍 도로확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과업지시서



국 토 교 통 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목 차

- I. 설 계 설 명 서
- II. 일 반 과 업 지 시 서
- III. 특 별 과 업 지 시 서
- IV. 보 안 대 책
- V. 기 타 사 항
- VI. 예 정 공 정 표
- VII. 설 계 예 산 서
- VIII. 산 출 근 거
- IX. 위 치 도

1. 설계 설명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 과업위치

구 분	노선	연장	시점	종점
무주-설천 사후환경	국도30호선	L=10.04km	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무주 무주-설천 도로확장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따라,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변 환경 영향에 대하여 공사 중·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 방지 및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된 각 평가항목별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주기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개요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개월(3,600일간)

II. 일반과업지시서

II.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도로건설 사업 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대기환경(대기질, 온실가스), 수환경분야(수질), 토지환경(토양, 지형·지질), 생활환경(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을 조사·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 가. 공사개요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 나. 영향권 내의 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 다. 공사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분석
- 라. 환경피해 민원 발생 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 마. 환경영향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바.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 사. 종합평가 및 결론
- 아. 보고서 작성

자. 기 타(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등)

3. 과업의 일반지침

- 가. 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시행한다.
-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된 내용(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다. 조사과정에서 환경적인 악영향의 도출 및 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사항목, 방법, 범위 등을 조정토록 한다.
-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 (1) 사업개요 검토 : 사업의 개요 및 주요공정을 검토한다.
- (2) 환경영향 요인 파악 : 주요공정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3) 대상 환경항목 설정 :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에 있어서 공사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 (4)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의한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립하되 사업시행 및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정한다.

나. 환경 현황조사 및 분석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서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설치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조사항목

(가) 자연환경

- ① 식물상 : 조사지역의 식물 분포현황 및 영향조사, 식재지역의 식물 활착 현황, 보호수 및 노거수, 가이식 수목 생육 상태 확인, 생태계교란생물 출현현황 및 제거대책 이행유무 조사, 법정 보호종을 조사한다.
- ② 동물상 : 조사지역의 종별 출현현황 조사, 법정보호종 조사를 조사한다.

(나) 대기환경

- ① 대기질 : 계획노선 주변의 대기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기질을 측정한다.
- ② 온실가스 : 공사 시 저감방안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다) 수환경

- ① 수질 : 계획노선 인근지역 수질오염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 및 지하수질을 측정한다.

(라) 토지환경

- ① 토양 : 공사 시 폐유저장소 주변의 토양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토양을 측정한다.
- ② 지형·지질 : 계획노선 주변의 비탈면 처리대책, 사토처리 현황을 조사한다.

(마) 생활환경

- ①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정처리 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제시한다.
- ② 소음·진동 :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영향, 계획노선 주변 통행차량에 의한 소음·진동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을 측정한다.
- ③ 기타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민원사항 및 추가적인 환경영향을 조사한다.

다. 환경영향 분석

- (1) 공사 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을 분석한다.
- (2) 당해 연도 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 시, 전년도 조사결과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 (3) 또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저감효과, 예측의 적정성, 기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 (4) 특히, 민원발생시 발생사유, 원인, 영향정도 및 대응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라.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 (1) 위 “다“항에서 분석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2)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3) 저감방안 수립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시 설정된 목표치와 운영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1) 환경영향조사 결과 수립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2) 기 수립된 환경관리 계획이 환경보전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획을 변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3) 사후환경관리 계획은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총괄 요약하여 각 항목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하되 사후환경관리기구 구성, 소요예산 및 재원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바. 종합평가 및 결론

위 사항에서 조사, 평가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을 내린다.

사.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측정, 조사한 결과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예측치와 비교·분석하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개월(3,60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다. 과업대상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기지연 되었을 경우
-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 가. 본 용역에 관한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 나. 과업의 추가시행 및 종료 등 과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용역대상 업무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투입인원 및 조사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다.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따라 품목 조정방법으로 한다.
- 라. 기타 발주청의 사정으로 예산의 증감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마.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세부과업내용

가.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 현황

구분	항목	조사 시기	조사항목	조사 위치	조사 내용	조사 주기
자연 생태 환경 분야	동 식 물 상	공사시	육상 식물상	○ 현황조사 지역 (평가시와 동일 지점)	○ 식물 분포현황 및 영향조사 ○ 식재지역의 식물 활착 현황 ○ 보호수 및 노거수, 가이식 수목 생육 상태 확인 ○ 생태계교란생물 출현현황 및 제거대책 이행유무 조사	분기 1회 (1분기는 조류, 2~4분기는 전분류군 조사)
			육상 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의 출현현황 ○ 유도올타리 및 생태통로, 측구탈출로 등 저감시설 설치유무 조사	
			육·수 생물상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부착조류의 현황 및 영향 파악 ○ 가교, 오탁방지막, 침사지 등 저감시설 설치유무 조사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 수달, 삵, 원앙 : 분기1회 조사 ○ 흰목물떼새 : 2분기 2회(5~6월 월조사) ○ 어름치 : 2분기 2회(4~5월 월조사) ○ 감돌고기 : 2분기 3회(4~6월 월조사) ○ 돌상어 : 2분기 3회(4~6월 월조사) ⇒법정보호종 조사시 생태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참여	
		운영시	육상 식물상	○ 현황조사 지역 (평가시와 동일 지점)	○ 식물분포현황 및 영향조사 ○ 식재지역의 식물 활착 현황	반기 1회
			육상 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의 출현현황 ○ 법정보호종의 출현현황 ○ 로드킬 모니터링	
육수 생물상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부착조류의 현황 및 영향 파악 ○ 법정보호종의 출현현황					

구분	항목	조사 시기	조사항목	조 사 위 치	조 사 내 용	조사 주기
대기 환경 분야	대 기 질	공사시	대기질 현황	○ 총 6개 지점 -A-1~6	○ PM-10, PM-2.5, NO ₂ (1일 조사)	분기 1회
			저감방안 적정운영 여부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세륜·세차시설 설치 여부 ○ 가설방진망 설치 여부 ○ 살수 및 살수차량 운행 여부 ○ 차량 제한속도의 규제 이행 여부 ○ 토사운반차량의 덮개부착 설치 여부 ○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운영시	대기질 현황	○ 총 6개 지점 -A-1~6	○ PM-10, PM-2.5, NO ₂ (1일 조사)	반기 1회	
	온실 가스	공사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사업노선	○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 건설자재 및 폐기물 재활용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현황	분기 1회
수 환경 분야	수질 및 수리 · 수문	공사시	지표수질 현황	○ 총 5개 지점 -W-1~5	○ pH, BOD, COD, TOC, SS, DO, 총인,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9개 항목)	토공사시 분기1회/ 교량기초공사시 6개월 (오산교 : 월2회, 기초교량 : 월1회)
			지하수질 현황	○ 총 4개 지점 -GW-1~4	○ 현황조사 항목 (일반세균 외 31개 항목)	분기 1회
			오수처리 시설 방류수질	○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1개지점)	○ SS, BOD(2개 항목)	

구분	항목	조사시기	조사항목	조 사 위 치	조 사 내 용	조사 주기
수 환경 분야	수질 및 수리 · 수문	공사시	저감시설 설치 현황 및 운영상태 점검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교량 공사시 저감시설(가도, 오탃방지막 등) 설치 유무확인 ○ 가배수로, 침사지 등의 저감시설 설치·운영상태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현황	분기 1회
			터널 지하수	○ 터널 주변지역	○ 유출량 기록 유무 확인 ○ 터널 주변 관정에서의 지하수위 조사·기록 유무 확인 ○ 터널 공사시 지질구조(절리 방향 및 분포) 조사·기록 유무 확인	
			폐수처리시설 방류수질	○ 터널 폐수처리 시설 방류수 (1개 지점)	○ BOD(1개 항목) [TMS 결과 인용 : TOC, SS, pH, T-N, T-P(5개 항목)] ※TMS부착 면제·유예 대상에 해당되어 미설치시 총 6개 항목 모두를 조사	폐수처리시설 가동 중 2회
			교량 공사시 하천의 부유토사 농도 모니터링	○ 오산교, 상장교, 신길3교, 진평교, 신길1교, 상길1교, 원청2교(7개지점) -W-2~5(상), W-6~8(상), W-6~8(하) (10개 지점)	○ SS(1개 항목) (상류 : 교량 하류 조사지점과 30m 이내 지역)	토공사시 분기1회/ 교량기초공사시 6개월 (오산교 : 월2회, 기타교량 : 월1회)
		운영시	지표수질 현황	○ 총 5개 지점 -W-1~5	○ pH, BOD, COD, TOC, SS, DO, 총인,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9 개 항목)	반기 1회
			지하수질 현황	○ 총 4개 지점 -GW-1~4	○ 현황조사 항목 (일반세균 포함 32개 항목)	

구분	항목	조사시기	조사항목	조 사 위 치	조 사 내 용	조사 주기
토지 환경 분야	토양	공사시	토양오염 현황	○ 폐유저장소 설치지점	○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Cr ⁶⁺ , Pb(7개 항목)	분기 1회
			저감방안 이행현황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지장물 철거 전 분뇨 적정처리 여부 ○ 폐유저장소의 설치 및 관리 방법	
	지형 · 지질	공사시	비탈면 처리대책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비탈면 보강공법 적용 유무 조사	반기 1회
			사토처리 현황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사토처리 현황	
	운영시	절토사면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비탈면 보강공법 적용 구간 유지관리 현황조사	반기 1회	
	생활 환경 분야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폐기물 적정처리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생활폐기물 및 분뇨 적정처리여부 ○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적정처리여부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유의 적정처리여부 ○ 폐수처리슬러지 적정보관·처리여부 ○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기록 현황
소음 · 진동					공사시	소음·진동 현황
		저감대책 이행여부	○ 사업노선 및 주 변지역	○ 가설방음판넬 설치 유무 확인		
		시험발파 시행유무 확인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발파시 소음·진동 기록대장 확인		
		발파시 소음·진동 현황	○ 총 3개 지점 -N·V-7~9	○ 노천 발파시 조사지점(2개소) : 6구간, 12구간 발파시 2회 조사 ○ 기곡터널 발파시 조사지점(1개소) : 15구간 발파시 2회 조사	노천 및 터널 발파시 2회	
운영시		소음·진동 현황	○ 총 7개 지점 -N·V-1~7	○ 방음벽 설치 지역 및 일반구간 소음·진동 현황 ○ 조사결과 목표기준치 초과여부 확인	반기 1회	

나. 동·식물상 분야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세부계획

구분	종명	조 사 내 용	조사 주기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수달	○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야생생물 I 급 ○대부분 1~2월에 번식하나, 연중 조건이 좋은시기에 교미함	○분기 1회
	삵	○멸종위기야생생물 II 급 ○번식기는 2~3월이나, 환경적 조건에 좌우됨	○분기 1회
	원앙	○천연기념물 제327호 ○번식기는 4~8월로 예상되나, 번식 개체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음	○분기 1회
	흰목물떼새	○멸종위기야생생물 II 급 ○번식기 5~6월	○분기 1회 -2분기 : 2회조사(5~6월 월1회)
	어름치	○천연기념물 제259호 ○산란기 4~5월	○분기 1회 -2분기 : 2회조사(4~5월 월1회)
	감돌고기	○멸종위기야생생물 I 급 ○산란기 4~6월	○분기 1회 -2분기 : 3회조사(4~6월 월1회)
	돌상어	○멸종위기야생생물 II 급 ○산란기 4~6월	○분기 1회 -2분기 : 3회조사(4~6월 월1회)
조사지점	○육상동물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환경영향평가지와 동일) ○육수생물 - 조사지점(환경영향평가지와 동일)		
조사기간	○사업 착공시 ~ 사업 준공시 까지		
조사방법	○현지조사 : 평가시와 동일 - 법정보호종 조사시 생태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참여(추가)		
조사주체	○사업시행자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 및 관리

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 1) 평가서 및 협의의견에 명시된 내용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조사·파악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발생여부, 민원발생여부 등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한 영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확인결과, 조치가 필요할 경우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현장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협의내용관리대장 점검

- 1) 현장조사 시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적정 작성 및 비치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이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다. 기 타

- 1)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피해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승인기관 또는 협의기관의 현장방문 및 확인·점검이 있을 경우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이행조치 사항(이행조치명령, 공사중지명령 등)이 있을 경우 발주청 및 협의내용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조치(계획)결과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에서 조속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승인기관 또는 협의기관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3) 또한, 공사착공·중지·준공 통보,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변경 통보 등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이행사항이 적절히 이행·조치될 수 있도록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5. 기타 유의사항

-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주변환경변화검토서 포함)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나.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에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 다. 측정 및 조사시 위치 및 내용을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라. 민원발생시 조사지점 및 횡수에 대하여 발주청이 추가로 요구하면 즉시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측정자료 및 저감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IV. 보 안 대 책

IV. 보 안 대 책

-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 2)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 3)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V. 기 타 사 항

V. 기 타 사 항

1. 환경영향조사 지역범위는 자연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해당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예정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즉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계획수립을 위한 답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환경영향조사 과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추진에 관련되는 다른 사업, 계획,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조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된 기간, 인력,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5. 부분별 과업수행방법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6. 본 과업에 투입된 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등으로 세분하여 작성하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기하고 계약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7.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 팀을 구성하고 수행한다.
8. 환경영향조사 결과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안 되며, 환경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9.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여야 한다.

1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의 사후관리 결과를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45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2개월 이내 관할 환경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2. 성과품 제출

종 류		제 출 기 한	내 용	수 량
착수 보고서		착수 후 15일 이내	과업수행 계획서	1부
분기 보고서	공사시	매분기조사 후 45일 이내	분기별 환경영향조사결과 보고서	각 5부
	운영시	매반기조사 후 45일 이내	반기별 환경영향조사결과 보고서	각 5부
최종 보고서		과업종료시 (매년 1회)	사후영향영향조사결과 통보서(부록포함) CD(컴팩트디스크) 조사 및 분석자료 기타(작업사진첩, 참고자료 등)	각 15부 각 1식 각 1식 각 1식

가. 성과품은 초안 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 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나.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다. 국·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한다.

VI. 예 정 공 정 표

VI. 예정공정표

공 종	공 사 시																												운 영 시												비고				
	착수후 1년				착수후 2년				착수후 3년				착수후 4년				착수후 5년				착수후 6년				착수후 7년				착수후 8년				착수후 9년				착수후 10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과업수행기본 계획수립	■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																																												
협의내용이행 현황조사	■																																												
분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								■								

VII. 설 계 예 산 서

VIII. 산 출 근 거

IX. 위치도

□ 위치도

